학교기업 운영규정

제정 2008.10.01 개정 2012.07.01 개정 2016.03.01 개정 2020.06.08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,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촉진,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학연계 교육사업의 기능과 제품의 생산, 판매, 용역 제공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한다.
- 제3조(명칭 및 소재지) ① 학교기업의 각 사업별 세부명칭은 별도로 정한다.
 - ②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대학교의 교지(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-94로 하되, 학교기업의 특성상 부득이 하거나 학교기업 설치·운영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지 밖의 부지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.

제2장 학교기업의 설치・운영

- 제4조(설치·운영계획) ① 학교기업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학교기업별 세부운영 규정을 포함한 설치·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학교기업을 설치 · 운영한다.
 - 1.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
 - 2. 학칙개정(규정개정이 필요한 경우)
 - ③ 학교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 - 1. 학교기업의 설치 · 운영 및 존폐에 관한 사항
 - 2. 학교기업 예산에 관한 사항
 - 3.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학교기업별 세부운영 규정
 - 4.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5조(사업) ①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. 이 경우 사업종목은

본 대학교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전공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·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.

- ②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기업의 운영활동과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한 현장실습교육
 - 2. 학교기업 사업의 기획, 운영, 결산 과정에 참여하여 학생의 창업 능력 교육
 - 3. 학교기업에서 창출한 신기술의 기술이전 및 신제품 개발
 - 4. 제품생산 및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
 - 5. 외부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수탁 생산

제3장 조직

- 제6조(조직) ① 학교기업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학교기업 책임자를 1인 둔다. 책임자는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 또는 외부인사를 위촉 할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. 책임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학교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 - ③ 본교 교직원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원, 직원은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각 직제는 겸직가능하다. 단, 교수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4장 운영위원회

- 제7조(구성) ①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과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운영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 -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8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학교기업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 - 2. 학교기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- 3. 관련 학부 및 전공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- 제9조(회의 소집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1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현장실습

- **제10조(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)** ① 학교기업을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 - ② 학교기업의 시설·설비,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,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, 실습여건 및 후생 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
- 제11조(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)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5%까지 인정 할 수 있다.
 -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당 최소 1주(40시간)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전공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 -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

제6장 재정 및 회계

- 제12조(재정) 학교기업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-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교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 - 2. 학교기업의 계약 및 성과에 의한 수익금 및 간접비
 - 3. 기부금
 - 4. 학교기업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료
 - 5. 이자수입 등 학교기업 관련 기타 수입금
- 제13조(수익금의 운영)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대학교 및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익금을 전출할 수 있으며, 순이익의 20%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%를 넘을 수 없으며 연간 보상금 총액이 교직원의 보수 총액을 넘을 수 없다.
 -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,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.
 - ④ 제②항,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따른다.
- 제14조(회계처리) ① 학교기업의 회계처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다.

- 제15조(예산과 결산) 학교기업의 대표는 본교의 회계연도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**제16조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, 본교의 학칙 또는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.